



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개정 수요 조사

1. 평소 귀기관(단체)의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의 개정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법령 개정 시 반영하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는 기관(단체)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'23.1.20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각 시·도에서는 동물위생시험소 및 각 시·군·구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검토서(양식) 1부. 끝.

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중앙부처(법령 담당부서), 농림축산식품부장관(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), 농림축산검역본부장(동물검역과장), 국립축산과학원장, 시·도 축산물 관련 부서, 축산관련 단체, 복부(56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장(54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3개 전부서)

주무관	남경우	사무관	김충현	축산물안전정책과	2022. 12. 30.
				장	김철희

협조자

시행 축산물안전정책과-9632 (2022. 12. 30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축산물안전정책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3247 팩스번호 043-719-3270 / nk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